

1.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휴원·휴교, 방학, 질병·부상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잠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14조의2, 별지 제7호의2)
- 나.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규정하여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14조의3 및 별표 3)
- 다.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④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격리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14조의5제1항)
- 라. 신청기한 및 사업주의 고지기한이 단축되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함(안 제14조의5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4조의2 중 “출산휴가를”을 “출산전후휴가를”로,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4조의3을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제19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제2장의2에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단기 육아휴직의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

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방학을 한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조치를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자녀의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의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일·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 의 대상 및 시기 등) ① (생 략)	제5조(일·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 의 대상 및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 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 에 따른 육아시간의 활용,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u>출 산휴가</u> (이하 “배우자 <u>출산휴 가</u> ”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 에 따라 허용하는 모성보호제 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 ----- ----- ----- ----- ----- <u>출 산전후휴가</u> (이하 “배우자 <u>출 산전후휴가</u>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u>출산 휴가</u> 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 ----- <u>출산 전후휴가</u> 를 ----- -----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
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 (생 략)

<신 설>

----- 출산전후휴가-----

-----.

제14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
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제14조의4 (현행 제14조의3과 같
음)

제14조의5(단기 육아휴직의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에서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
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
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
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
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6

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방학을 한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조치를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자녀의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질환(제14조의3 관련)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0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3
라. 전자간	O14
마. 자간	O15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O16
사. 절박유산	O20.0
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자.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23.5
차. 임신중 당뇨병	O24
카. 다태 임신	O30
타. 다태 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O31
파. 자궁의 선천 기형의 산모 관리	O34.0
하.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1
거.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O34.3
너.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4
더.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러.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O36.5
머. 양수과다증	O40
버. 양수과소증	O41.0
서.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O41.1
어. 양막의 조기 파열	O42
저. 전치태반	O44
쳐.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	O45
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O46
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O60.0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급성 류마티스 열	I00-I02
나.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다. 고혈압성 질환	I10-I15
라.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바. 급성 심장막염	I30
사.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자.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차.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I34
카.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I35
타.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파. 폐동맥판장애	I37
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너. 급성 심근염	I40
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러. 심근병증	I42
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버.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서. 기타 전도장애	I45
어. 심장정지	I46
저. 발작성 빈맥	I47
처. 심방세동 및 조동	I48
커. 기타 심장부정맥	I49
터. 심부전	I50
퍼.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사구체질환	N00-N08
나. 신세뇨관-간질질환	N10-N16
다. 신부전	N17-N19
라. 요로결석증	N20-N2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2. 21.>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확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직급)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						
신청내용	출산전후휴가 청구 기간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기간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육아휴직 기간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작성방법

1. 소속부서 및 직위(직급)란에는 육아휴직 신청 시의 소속부서 및 직위(직급)를 적습니다.
2.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란에는 대상 자녀(영유아)의 성명을 적습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대상 자녀(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습니다.
3.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란에는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을 적되,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4. 신청내용란에는 출산전후휴가(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개시·종료일을 적습니다.
※ 휴가 또는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하려는 각각의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종료일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

위와 같이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주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76